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목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2025. 1. 2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순 서

I. 향후 저출생 대책 점검·관리 기본방향 1

II. 주요 성과목표 달성 추진계획:

육아휴직 사용 확대 3

III. 추가 보완과제 5

I. 향후 저출생 대책 점검·관리 기본방향

① 정부 차원의 조치 (input) 측면에서 저출생 대책 이행은 대부분 마무리

- ① 대책 발표 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과제별 이행상황 점검
→ 현재까지 총 151개 과제 중 147개 과제 既조치*

* 3대 핵심분야는 총 108개 과제 중 104개 既조치

'25.1월말 기준 저출생 대책 과제 조치 현황

(개)	3대 핵심분야			그 외			합계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결혼·난임 지원	사회인식 변화	기타	
전체	38	53	17	23	13	7	151
이행	37	53	14	23	13	7	147

- ② 저출생 대책 예산수반 과제는 금년 예산에 모두 대책 내용대로 반영

- ③ 법률 개정 필요과제 20건 중 13건 개정 완료(잔여 7건*도 국회 계류중)

*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예외사유 축소 민간 돌보미 기관 등록제 도입 등

② 앞으로는 성과목표 (Outcome)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점검에 주력

- 저출생 대책 과제 이행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성과(outcome)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출생 대책 관리·점검 체계 개편
- 既수립된 3대 분야 15개 핵심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소관 부처 책임 하에 추진계획, 애로요인, 보완 필요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

* 「저출생 대책 성과관리 계획(안)」 마련('24.12.3,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

⇒ 1월 고용부를 시작으로 매월 핵심 지표 소관부처에서 추진계획 순차 보고

'25년 주요 성과지표별 추진계획 점검 일정(안)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점검지표	육아휴직 사용률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일수	공공보육 이용률	주택공급물량 중 신혼·출산가구 비율	가임력 검사 지원인원
소관부처	고용부	여가부	교육부	국토부	복지부

【참고】 3대 분야 15개 주요 성과 지표

최종 정책목표	합계 출산율 : '30년 1.0명 이상 결혼 의향 제고 : ('24) 34.9% → ('30) 50.0% 출산 의향 제고 : ('24) 52.1% → ('30) 70.0%
① 일·가정 양립	① 30세~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 ('24)22.3%→('27)15%→('30)10% ②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 ('23)7.4%→('27)50%→('30)70% ③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 : ('23)73.2%→('27)80%→('30)85% ④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수급자 수 : ('23)23,188명→('27)57,000명→('30)70,000명 ⑤ 유연근무제 활용률 : ('24)15.0%→('27)25%→('30)30%
② 교육·돌봄	⑥ 영유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 ('23)27%→('27)22%→('30)20% 이하 ⑦ 공공보육 이용률 : ('23)40%→('27)50%→('30)50% 이상 ⑧ 교사 대 영유아 비율 : ('24, 0세반)1:3→('27)1:2, ('24, 3~5세반)1:12 →('27)1:8 ⑨ 상생형 어린이집 이용 사업장 수 : ('23)2,166개소→('27)2,600개소→('30)3,000개소 ⑩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일수 : ('23)33일→('27)10일→('30)5일
③ 주거 및 임신·출산	⑪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 결혼자금 부족 비율 : ('24)32.4%→('27)27%→('30)25% ⑫ 출산가구 주택공급 물량 : ('24)7.2만호→('27)12만호→('30)12만호 이상 ⑬ 연간 민간분양 물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 ('24)18%→('27)23%→('30)23% 이상 ⑭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 : ('24)8만명→('27)21만명→('30)24만명 ⑮ 난임시술 지원건수 : ('23)17.8만건→('27)20만건→('30)22만건

Ⅱ. 주요 성과목표 달성 추진계획: 육아휴직 사용 확대

◆ (성과목표) 필요할 때 소득걱정 없이 **충분한 육아휴직** 사용

지표 : 육아휴직 사용률(%)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30년
(父) 육아휴직 사용률(% , 민간+공공)	7.4	10	25	40	50	70
(母) 육아휴직 사용률(% , 민간+공공)	73.2	72	75	78	80	85

1 '25년 주요 추진계획

① 확대된 제도의 현장 안착 + 잔여 과제 조기 시행에 최우선 방점

- ❶ 저출생 대책 과제 중 이미 시행(예정)된 과제는 신속한 집행, 제도 홍보 등을 통해 현장 체감도 제고에 주력

육아휴직 관련 저출생 대책 과제

구 분	주요 과제
'25.1.1. 시행	• 육아휴직 급여상한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분담 동료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신설
'25.2.23. 시행 (예정)	•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기간 1년6개월로 연장 •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2회→3회)

- ❷ 아직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일부 과제는 입법 여건 조성 시 최대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소통·협력 강화

육아휴직 관련 국회 계류 중인 법률 주요내용

구분 (법률명)	주요 내용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	• 단기 육아휴직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특정한 경우 배우자 임신 중에도 사용 허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예외사유 축소

② 중소기업의 실질적 사용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❶ (대체인력)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시에도 연 최대 1,840만원**까지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 ('24년) 출산휴가·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에만 지급 → ('25년) 육아휴직 시에도 지급

** (정부지원금) 연 1,440만원 +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200만원 + (지자체) 최대 200만원
⇒ 육아휴직자 평균연봉 3,200만원의 50% 이상

- ❷ (맞춤형 컨설팅) 기업별 진단을 거쳐 일·육아 지원제도 활용방안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주는 일·육아동행 플래너*(고용센터) 지원 확대

* '24년 26명 플래너(13개 지방관서)가 1,088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 등 지원

- ❸ (노사단체 협조) 제도 확산을 위해 경제계·노동계와의 소통·협력 강화

-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위원회」('24.11월 출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사례 현장 확산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 노동계와도 소통하여 제도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컨설팅 사업 등 연계 지원

③ 기업의 자발적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

- ❶ 금년부터 시행되는 상장법인의 일·가정 양립 지표 공시*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방안 마련

* '25.3월부터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현황 등을 반영하여 공시(DART)

- 상장기업 공시와 별도로 일·가정양립 공시제 도입* 방안 검토

* 경제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대상기업·지표·방식 등 구체적인 제도설계 추진

- ❷ 각종 ESG 관련 공시기준, 가이드라인 등에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 보완방안 검토

- ❸ 일·생활 균형 선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검토

* 세제지원 대상·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25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

4 제도 확산을 위한 밀착 홍보 강화

- ① 육아지원 3법* 시행일('25.2.23)에 맞춰 확대되는 일·육아 지원제도 주요 내용에 대한 근로자·사업주 대상 집중 홍보 추진

*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 ② 가정의 달(5월), 고용평등강조주간(5.25~31) 등 계기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홍보·캠페인* 개최 및 우수기업·사례에 대한 포상 추진

*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임신부 마더박스에 홍보 리플릿 포함하여 배포 등

- ③ 현장행보, 민간 협업 생활밀착형 홍보* 등 연중 상시 추진

* 우유팩, 택배박스, 전기요금고지서에 한줄문구 게시, 숏폼 영상(조회수 39만회) 등 홍보 중

2 보완 필요사항

- (사각지대 해소) 특고,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관계부처 합동)

- 중소기업 근로자 등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발굴, 홍보 등 지속 추진(중기부, 고용부 등)

- (사업주 지원강화) '24년 신규 도입된 동료업무분담지원금*(월 20만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범위·단가 등 개선방안 검토(고용부)

* ('24년) 육아기 단축에만 지원 → ('25년)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지원

- (유연한 근로여건) 육아휴직 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여타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 활성화 방안 검토(고용부)

- (통계 개선)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납부유예 서식에 자녀 정보를 추가하도록 개정(복지부)

* (現)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통계청)에는 당해연도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만 집계

- (공공부문 선도) 공직사회 출산·양육친화적 환경조성 방안 마련(인사처)

Ⅲ. 추가 보완과제

- ◇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규제**를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 지속 발굴

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산림청

현장의 목소리

- ▶ “아이를 여럿 키우다보니 여행 한번 다녀오려고 해도 교통비·숙박비 등 부담이 큼니다.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가족친화 휴게시설 개선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대상, 3년간 한시적 제도 운영(재정고속도로)

** 정부경영평가 등 도로공사 부담완화 보완대책 함께 강구

현 행	개 선
출퇴근 할인(20~50%), 경차·친환경차 할인(50%), 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50~100%) 등	⇒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20% 할인(신설)

-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족사랑화장실·수유실** 시설을 개선하고, **키즈존·놀이시설**을 지속 확대

* (현황) 수유실 209개소, 가족사랑화장실 178개소, 키즈존 2개소 운영중

②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혜택 확대

- 수요가 많아 예약이 어려운 휴양림 내 숙박시설에 대해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우선 예약** 확대 운영

* 현재 37개 휴양림에서 다자녀 우선예약 객실 운영 중 → 47개 휴양림으로 운영 확대

** '24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평균 경쟁률: 5.7:1

-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대상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 면제** 신설('25.下)

현 행	개 선
입장료 면제	⇒ 입장료 + 주차료 면제 (중·소형 3천원, 대형 5천원)

2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제도 개선 교육부, 고용노동부

1 일반고등학교 다자녀 우선배정 확대

현장의 목소리

- ▶ "작은 아이가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있는데, 큰 아이와 다른 학교를 배정받을까봐 걱정이 큼니다. 방학·시험기간 등 학사일정이 다르면 아이들을 챙기는데 어려움이 커서, 중학교처럼 고등학교 입학 때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현황)** 11개 교육청*에서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해 일반고 배정시 희망고, 근거리, 형제·자매 동일교 기준 등에 따른 우선배정** 운영

* 미운영 교육청: 서울, 인천 등 6개

** 예) 희망고(부산), 근거리(전북), 형제·자매 동일교(광주·대전) 등

- **(추진방안)** 다자녀 우선배정을 수도권 포함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

* 세부 운영방식(근거리/형제·자매 동일교/희망고 배정 등)은 지역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도 교육청이 자율 시행

2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개선 추진

현장의 목소리

- ▶ "정부 지원금 수령을 믿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을 적극 장려했는데, 근로자의 퇴사로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 **(현황)**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부여(30일 이상) 시 사업주에게 지원금(월 30만원) 지급

* 근로자의 육휴·육단 사용기간 중 50% 지급 → 사용 종료 후 6개월 뒤 잔여 50% 일시 지급

- 現 지급구조 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마치고, 6개월 경과 전에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잔여 지원금 50% 수령 불가

- **(추진방안)**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전액 지원

지급 시기	현 행	개 선
육휴·육단 기간 중	50% 지급	50% 지급
육휴·육단 종료 후	6개월 이후 나머지 50% 지급 (기간 내 퇴사 시 미지급)	⇒ 6개월 이후 나머지 50% 지급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지급)

3 출산 · 양육 친화적 공직여건 조성 인사혁신처

1 육아휴직 사용대상 확대

현장의 목소리

- ▶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아직 돌봄수요가 커서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더욱 양육 친화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 초등 자녀에 대한 실질적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만8세(또는 초등 2학년)에서 **만12세**(또는 초등 6학년)로 확대

2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개선

현장의 목소리

- ▶ “아내의 출산이 임박할 경우 남편도 병원진료 동행, 출산준비 등을 함께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 **사용 가능 기간**도 **출산 전·후로 30일씩 연장**(약 8,900여명*의 아빠 공무원 수혜)

* '23년 인사혁신통계연보(행정부 국가공무원) 기준

현 행	개 선
출산휴가 10일(다태아 15일)	출산휴가 20일(다태아 25일)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3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확대

- 기존에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하도록 개선안 마련(약 5,700여명의 출산 부모 혜택)

현 행	개 선												
<table border="1"> <tr> <td>첫째 자녀</td><td>미지급</td></tr> <tr> <td>둘째 자녀</td><td>2,000점 지급</td></tr> <tr> <td>셋째 자녀 이후</td><td>3,000점 지급</td></tr> </table>	첫째 자녀	미지급	둘째 자녀	2,000점 지급	셋째 자녀 이후	3,000점 지급	<table border="1"> <tr> <td>첫째 자녀</td><td>1,000점 지급</td></tr> <tr> <td>둘째 자녀</td><td>2,000점 지급</td></tr> <tr> <td>셋째 자녀 이후</td><td>3,000점 지급</td></tr> </table>	첫째 자녀	1,000점 지급	둘째 자녀	2,000점 지급	셋째 자녀 이후	3,000점 지급
첫째 자녀	미지급												
둘째 자녀	2,000점 지급												
셋째 자녀 이후	3,000점 지급												
첫째 자녀	1,000점 지급												
둘째 자녀	2,000점 지급												
셋째 자녀 이후	3,000점 지급												